

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9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5. 12.

발의자 : 김예지 · 류호정 · 이용
구자근 · 김희곤 · 서병수
김선교 · 최연숙 · 류성결
이태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

- 보급하여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체계적인 점자교육을 위해서는 교재 개발 · 보급뿐 아니라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, 점자교육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능력의 향상 · 평가를 위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

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 2 신설).

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전단 중 “개발·보급하여야”를 “개발·보급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2조제2항에”를 “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 또는 제12조제2항에”로, “점자교육의 실시기관”을 “점자교육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점자 능력의 검정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능력의 향상·평가를 위하여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·절차·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점자교육의 실시기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의 실시기관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점자교육의 기반조성) ①</p> <p>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<u>개발·보급하여야</u>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·단체 중 <u>제12조제2항에</u> 따른 점역·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<u>점자교육의 실시기관으로</u>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11조(점자교육의 기반조성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개발·보급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 또는 제12조제2항에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점자교육원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</p>

	<p><u>된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의 지 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11조의2(점자 능력의 검정) ①</u>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능 력의 향상·평가를 위하여 점 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·절차·내용 및 시 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
<u><신 설></u>	